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27

발의연월일: 2021. 4. 21.

발 의 자:김원이·최혜영·허종식

맹성규・박성준・박홍근

윤건영 • 이동주 • 이정문

신정훈 · 이해식 · 서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을 위하여 변리 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 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변호사법」의 경우 광고에 대한 규제를 법에 직접 규제하여 법률 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으나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으 로 각종 홍보 매체들의 발달로 인하여 자격이 없는 이가 서비스를 제 공한다고 하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변리사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 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8조의5 신설 및 제24조제3항 신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5(광고) ①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 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서 대한변리사회가 정하는 광고
-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위회를 둔다.
-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지8조의5(광고) ① 변리사·특허법 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 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 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 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 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 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 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

록 하는 내용의 광고

- 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 용의 광고
-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리사회가 정하는 광고
-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 사를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정한 다.
- 제2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 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 ② (생 략)

<신 설>